

2026년 4월 성내3동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회의록

결재	간사	부회장	회장
			

일시	2026. 4 27.(월) 19:00	장소	성내3동주민센터 2층, 제1강의실
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

참석자	- 주민자치 위원: 송영하 회장 등 39명 (결원 5명) - 동주민센터: 자치회관 담당 1명
-----	--

회의 결과

■ 보고안건

1 성내3동 주민자치회 분과 재편성

1. 자치계획 실행사업

1) 복지분과: '인생네컷(장수사진)'

- 분과회의: 매월 정기회의 후 분과회의
⇒ 분과회의를 거쳐 진행하기로 함(사전조사 할예정)

2) 축제추진분과: '성내3동 골말체육축제'

- 분과회의: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6시30분
- 축제일시: 2026년 9월 12일(토) 오후 1시~5시
- 축제장소: 서울제일교회(예정)
- 축제내용: 추억으로 가는 골말축제
- 추진사항: 단체전, 개인전, 느린우체통, 옷으로 보는 시간여행, 체험등
⇒ 단체전에 가족, 직능단체 등 모집 예정 (단체전, 개인전, 노래자랑등 논의중)
⇒ 장소: 서울제일교회

3) 환경안전분과: '성3 환경안전지킴이'

- 분과회의: 매월 정기회의 후 분과회의
- 환경 캠페인: 시기 및 장소는 강사일정과 공원 및 골말체육축제 추진예정
- 화단가꾸기: 4개조 운영

1조	이O호, 백O이, 이O동, 허O숙	3조	이O근, 김O임, 김O서, 이O건
2조	남O희, 차O기, 조O선, 홍O숙	4조	한O수, 문O순, 안O익, 이O남

⇒ 방역시기 및 일정 논의중

2. 자치계획 비예산 실행사업

1) '성내3동 골말따숨(머리)나눔' 1호점 로데오미용실

- 1차: 2026년 1월 19일(월) 1명
- 2차: 2026년 3월 16일(월) 1명
- 현판식 2026년 3월26일(수)
- 3차: 2026년 4월20일(월) 1명

2) '성내3동 골말따숨(곶간)나눔'

① 1호점 호텔베이커리

- MOU체결 매월 셋째주 수요일 독거노인 10가구
- 1차: 4월 15일(수)

② 2호점 낙원떡집

- MOU체결 매월 셋째주 수요일 독거노인 10가구
- 1차: 4월 20일(월)

2 성내3동 주민자치회 회비 현황

■ 논의안건

1 2025년 5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일정 변경(안)

기존 개최 일시	변경 개최 일시
5월 25일(월) 19:00	5월 18일(월) 19:00

- ※ 5월25일 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 및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회의금지
⇒ 재적위원(39명) 과반(34명) 참석으로 '2025년 5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일정 변경(안)' 회의를 개의하였고, 출석위원(34명) 과반수(34명) 찬성으로 의결함.

■ 기타안건: 주민자치회 위원 관련 「공직선거법」 유의사항

□ 선거운동 금지 (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)

- 이·통·반장 및 주민자치회(주민자치위원회 포함) 위원은 「공직선거법」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
- ※ 선거운동 :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「공직선거법」 제7장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
- 이·통·반장, 주민자치회 위원이 선거사무장, 선거사무원, 회계책임자 등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임해야 함

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**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**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·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·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7. **통·리·반의 장** 및 읍·면·동주민자치센터(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·면·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·복지·편익시설을 총칭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된 **주민자치위원회(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·면·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위원**

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·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·**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·리·반의 장**이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, 회계책임자, 연설원, 대담·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**선거일 전 90일(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)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,** 선거일 후 6월 이내(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)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.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.

※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의 주민자치회 위원 적용 여부 : 대법원 적용

[대법원 2025.5.1., 선고 2025도3282] 「공직선거법」 위반

☞ **주민자치회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제1항제7호의 '주민자치위원회'에 해당하므로, 주민자치회 위원도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에 포함**

□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(「공직선거법」 제86조)

- 이·통·반장,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

제86조(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) ① 공무원(국회의원과 그 보좌관·선임비서관·비서관 및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다),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,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, **통·리·반의 장, 주민자치위원회위원**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,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(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·새마을운동협의회·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)의 상근 임·직원 및 이들 단체 등(시·도조직 및 구·시·군조직을 포함한다)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
2.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
3.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
4. 삭제 <2010. 1. 25.>
5.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
6.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
7.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

□ 각종 집회 등의 제한(「공직선거법」 제103조)

-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, 주민자치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음

제103조(각종집회 등의 제한)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.

-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(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·새마을운동협의회·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) 및 **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.**
-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·종친회·동창회·단합대회·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.

□ 주민자치회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(‘26.3.4. 질의회신)

- 주민자치회가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회의(정기회의, 임시회의 등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말함)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「공직선거법」(이하 ‘법’이라고 함)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며,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해당 회의 개최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
- 다만, 선거일 전 60일(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)부터 선거일까지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총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 위반될 수 있음
- 한편, 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을 것인바, 같은 법조항의 ‘선거기간’은 법 제33조에 규정된 ‘선거기간’을 의미

「공직선거법」 제33조(선거기간)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대통령선거는 23일
2.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

③ “선거기간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.

1. 대통령선거: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
2.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: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

제86조(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(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)은 선거일 전 60일(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)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4.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**교양강좌, 사업설명회, 공청회, 직능단체모임, 체육대회, 경로행사,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**

라.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(有償)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·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.

5. **통·리·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**. 다만, 천재·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■ 향후일정: 2026. 5. 18.(월) 19:00 5월 정기회의 개최

회의
사진

